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성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7월 06일

발 의 자: 문성호, 강석주, 경기문,
 곽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76명)

1. 제안이유

- 고용없는 저성장,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전례없는 경제 불안과 더불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발생으로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함(안 제1조).
- 나. 주민생활안정제도 지원기준 설정 기준을 변경함(안 제3조제4항).
- 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안심소득 대상자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4호).
- 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설함(안제6조)
- 마. 서울형긴급복지를 신설함(안제7조)
- 바. 서울안심소득을 신설함(안제8조)
- 사.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를 “경제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다양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제도 지원기준 설정 시 실질적인 소득이 낮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물가상승률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이 긴급한 생활안정”을 “생활안정지원”으로 한다.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안심소득 대상자

제5조의 제목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을 “(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주거비 지원
3. 의료비 지원
4. 해산·장제비 지원
5. 급식관련 경비 지원
6. 교육관련 경비 지원
7. 명절보상품 지원
8. 월동대책비 지원
9.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10.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① 시장은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비
2. 해산·장제비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로 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서울형 긴급복지) ①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정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가 발생할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수준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서울안심소득) 시장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재산기준 326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안심소득(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u></p> <p>③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1조(목적) ----- <u>경제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u> -----.</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다양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안정-----</u> ----- -----.</p> <p>② ----- ----- <u>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u>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주민생활안정제도 지원기준 설정 시 실질적인 소득이 낮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물가상승</u></p>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지원이 긴급한 생활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생 략)

제5조(생활안정지원의 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보상품 지원

를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안심소득 대상
자

5. ----- 생활안정지원-----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
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
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주거비 지원
3. 의료비 지원
4. 해산·장제비 지원

- 5. 월동대책비 지원
- 6. 긴급구호비 지원
- 7.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5

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제5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④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

- 5. 급식관련 경비 지원
- 6. 교육관련 경비 지원
- 7. 명절보상품 지원
- 8. 월동대책비 지원
- 9.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 10.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①

시장은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계비
- 2. 해산·장제비
-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로 한다.

정한다.

⑤ 제5조제1항제7호의 지원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신청에 의하여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급여의 지급조건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서울형 긴급복지) ①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정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가 발생할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수준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 · 제8조 (생략)</p>	<p><신설> 제8조(서울안심소득) 시장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재산기준 326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안심소득(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 (생략)</p>	<p>제9조 · 제10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p> <p><신설> 제11조(위탁)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p>